

1920년대 조선불교의 승려 결혼에 대한 논쟁 조선인의 찬반 논쟁을 중심으로

제점숙

동서대학교 부교수, 한일근대종교 전공

momoko10@naver.com

I. 머리말

- II. 『조선불교』 잡지에 나타난 ‘승려결혼’을 둘러싼 논쟁
 - III. 승려 결혼에 대한 조선불교 관계자의 반응
 - IV. 맷음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526). 또한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한국불교태고종단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함.

I . 머리말

근대 조선불교의 승려 결혼에 대한 논쟁은 1926년 본말사법 개정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승려 결혼을 반대하는 백용성의 건백서는 조선불교계 승려 결혼 찬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선불교단’¹의 「승려육식처대의 가부(僧侶肉食妻帶の可否)」라는 제목으로 모집한 기고문들이다. 이글들은 『조선불교(朝鮮佛教)』라는 잡지 제26호 안내를 시작으로 제28호까지 특집 기획으로 게재되었다. 그 배경을 제26호 투고모집 안내 내용에서 보자면 “승려에게 육식처대를 공허(公許)하지만, 과연 옳은 것인가, 어쩔 수 없지만 그릇된 것인가. 고하노라. 만천하의 승속제현(僧俗諸賢) 각위,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당당히 본지에 피력하여 논의하라!”²고 기술하고 있다. 이때가 1926년 6월로, 본사 주지에 결혼한 승려도 자격이 주어졌고, 이들은 주지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
- 1 조선불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친일 단체로 언급되고 있다. 윤기엽은 “조선불교대회의 후신인 조선불교단은 불교진흥회를 연원으로 하면서 불교옹호회를 승계한 친일 성향의 불교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불교단과 불교옹호회 두 단체에서 모두 주요 임원으로 활동한 李完用·李允用 형제, 韓昌洙, 權重顯 등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일본인 고바야시 ゲンロク(小林源六), 나카무라겐타로(中村健太郎) 등은 조선불교단의 주요 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이 단체의 성격을 친일단체 명명하는 데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마이카 아위백은 언급한다. 즉, “조선불교에 투고한 일본인 기고가와 조선인 기고가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폭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선불교단을 단순하게 친일 집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윤기엽, 「일제 강점기 朝鮮佛教團의 연원과 史的 변천: 조선불교단 임원진의 구성과 이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97호(2017), 293쪽; 마이카 아위백, 「친일불교」 역사학의 재고: 조선불교단과 1920년대 조선에서의 승려결혼에 대한 논쟁, 『아세아연구』 제51권 제3호(2008), 48쪽.
 - 2 「僧侶肉食妻帶の可否」, 『朝鮮佛教』 제26호(1926), 23쪽. 참고로 이 논문의 일본어로 된 기고문의 번역은 김광식 인용문을 제외하고 모두 필자에 의한 것임.

사법 개정을 결정한 시기이다. 이로써 같은 해 7월 범어사를 필두로 사법 개정의 인가가 시작되고³, 다음 해 1927년 은해사를 비롯하여 결혼한 승려의 주지 취임 인가는 이어졌다.⁴

이리하여 제27호의 「조선승려육식처대문제비판(朝鮮僧侶肉食妻帶問題批判)」이라는 제목으로 논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사법 개정에 따른 백용성의 맹렬한 반대운동의 언급과 함께 당시야말로 조선 정신계의 대파란, 조선불교 부흥의 위기라 언급한다. 그리고, “그 찬부(贊否) 양자 주장 및 국외(局外) 중립 입장에 있는 내지(일본-필자) 쪽 각종명가(各宗名家) 소감 및 종교행정당국 방침 등을 소개하는 것은 결코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⁵라고 논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제28호에는 제27호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이를 내용을 “본지 전호(前號)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소개되면서 일반의 많은 호감을 얻었지만, 전호 마감 후 계속해서 유력한 투고문이 들어왔기에 순서대로 게재한다.”⁶라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승려 결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조선인을 비롯하여 일본인, 조선총독부의 행정 당국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조선불교와 일본불교와 관계가 있는 조선인, 일본인들이 대거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도 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든 기고문을 언급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 조선인들의 기고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짭지의 논쟁과

3 「梵魚寺本末寺法改正ノ件」, 『寺刹住持就職認可 및 本末寺法中 改定의 件』(192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Event.do?id=0001565460&docid=0027159444, 열람일 2019.9.15).

4 「銀海寺住持就職認可ノ件」, 『寺刹住持就職認可 本末寺法中改正 其他에 關한 件』(192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Event.do?id=0001565465&docid=0027157328, 열람일 2019.9.15).

5 「朝鮮僧侶肉食妻帶問題批判」, 『朝鮮佛教』 제27호(1926), 2쪽.

6 「朝鮮僧侶肉食妻帶問題批判」, 『朝鮮佛教』 제28호(1926), 13쪽.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김광식과 마이카 아워백이 논한 바 있다.⁷ 김광식은 주로 조선인의 반대 논쟁에 중점을 두고, 마이카 아워백은 일본인의 반대 논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인들 논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김광식의 성과를 비교 고찰한다. 그러한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찬반의 논쟁보다는 기존 성과에 비교 및 재고찰을 진행하고, 당시 이 잡지에 투고한 조선인들이 생각하는 조선불교개혁, 승려 결혼에 관한 생각, 승려에 대한 인식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바, 결과론적 관점이 아닌 이러한 논쟁이 나오게 된 그 과정과 배경을 조선인 기고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는 대처승과 비구승의 첨예한 대립 매개인 ‘승려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당시의 그들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가 오늘날 여전히 진행 중인 ‘친일-항일’의 프레임에 얹매인 결혼한 승려의 문제를 조금씩 해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조선불교』 잡지에 나타난 ‘승려결혼’을 둘러싼 논쟁

한국불교의 ‘친일-항일’을 가르는 대표적 표상으로서 승려 결혼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김광식은 일찍이 이에 대해 “한국 근·현대기의 불교사를 서술하고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를바 승려의 帶妻문제가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는 일제의 불교 침투, 불교혁신론의 전개, 전통불교의 몰락, 불교계 모순의 근원, 비구·대처 간의 갈등 등에 대한 이해에서 대처 문제가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⁸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7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과 백용성의 건백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1집(1997); 마이카 아워백, 앞의 논문(2008).

8 김광식, 앞의 논문(1997), 195쪽.

한편, ‘친일-항일’ 구도에서 바라보는 승려 결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기 저기서 흘러나왔다. 특히, 조성택은 당시 결혼한 유학승에게는 이 승려의 결혼문화가 ‘새로운 시대’에 꼭 맞는 문명된 불교로 인식되었을 것임을 지적하였고⁹, 박재현은 조선불교의 근대성, 왜색불교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종교의 사회성 즉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불교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윤리적 문제로 언급한다.¹⁰ 승려 결혼 문제를 어느 연장선에 둘 것인가를 떠나 ‘친일-항일’의 척도로 자주 언급됐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오늘도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이러한 이항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 당시 『조선불교』 잡지에 나타난 승려 결혼이라는 화두로 불거진 조선불교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조선불교』의 제27호-제29호에 실린 기고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표3과 같다. 먼저 제27호에 수록된 기고문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이 호에는 조선불교 잡지의 주간인 1번의 나카무라 산쇼를 비롯하여 총독부 학무국 촉탁인 2번 와타나베 아키라, 학무국 종교 과장인 한국인 16번 유만겸, 3번 권상로, 조선불교계 승려들, 그리고 일본불교계의 승려들이 투고하고 있다.¹¹ 또한, 동아일보 기사도 확인된다. 14번 김연성은 경성본파본원사별원 소속으로 일본불교로 입신한 조선인이다. 즉, 각처의 다양한 인물들의 글 총 16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고문에서는 승려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찬반 생각과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총독부 행정기관과 언론 기관의 입장들도 엿볼 수 있다.

⁹ 조성택, 「근대불교학과 한국 근대불교」, 『민족문화연구』 제45호(2006), 85쪽.

¹⁰ 박재현, 「근대 불교의 대처식 육 문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철학』 제93집(2007), 57-58쪽.

¹¹ 애석하게도 기고문 중 와타나베 아키라의 기고문은 누락되어 있으며, 권상로 기고문은 마지막 페이지만 확인된다.

표1-『조선불교』 제27호에 승려 결혼 관련 기고문(1926)

	투고자	제목
1	主幹 中村三笑	朝鮮僧侶の肉食妻帯に就て(조선승려 대처육식에 대해)
2	朝鮮總督府学務局 渡辺彰	国法と宗教制度との関係(국법과 종교 제도와의 관계)
3	權相老	寺法改定は僧侶の破戒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사법 개정은 승려 파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任海峰	須らく僧位を捨てよ—佛戒を汚すの行為は許すべからず—(당연히 승위를 버려라 불교를 더럽히는 행위는 허락할 수 없다)
5	京城本派本願寺別院 斯波 隨性	朝鮮仏教界の維新(조선불교계의 유신)
6	中央教務院 李混惺	朝鮮佛教の興廢は何の関係もない(조선불교의 흥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7	曹洞宗京城別院 五十風 絶聖師	朝鮮僧界の人物佛底を救ふの道(조선승계 인물불저를 돋는 길)
8	釜山 金松月	朝鮮佛教僧侶の破戒的運動(조선불교승려의 파계적 운동)
9	臨濟宗妙心寺後藤瑞嚴	朝鮮佛教界に及ぼす結果が注目に値せん(조선불교계에 미치는 결과가 주목할만하다).
10	日蓮宗 護國寺 逸見通漢	即行は時期尚早ではないか(바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11	京城 洪鎮赫	朝鮮佛教の復興は時代的な覚醒と僧侶の人格向上に在る(조선불교의 부흥은 시대적 각성과 승려의 인격향상에 있다)
12	高野山別院澤光範	必要にあらず止むを得ざるなり(필요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3	小白頭陀 安錫淵	석존의 嫡子로 娶妻食肉이 可乎아呀-時代已晚이다.(한글 기고문)
14	京城本派本願寺別院 金連聲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私は朝鮮僧侶の肉食妻帯の實現を渴望します(얼마나 고귀한 문제인가—나는 조선승려의 육식처대 실현을 갈망합니다)
15	東亞日報	人間の本性に符合する行動を取らなければならぬ(인간 본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16	総督府学務局宗教課長 焉萬兼	宗教行政の立場から(종교행정의 입장에서)

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할 일본인 기고문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자면, 1번의 나카무라의 글에서는 “나는 이 문제를 대국(大局) 고처(高處)에서 관찰하기 위해 육식처대(肉食妻帶)의 본가 본고장인 내지 불교에 대해 그

현상을 조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일본불교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승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조선불교는 일본불교와 상황이 다르기에 조선불교의 입장에서 논할 것을 덧붙인다.¹² 또 다른 9번의 임제종 묘심과 승려의 글은 조선불교 승려 결혼의 공식화에 따른 조선불교 계의 동향을 일본불교계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을 언급하는데, “이에 대해 장래 조선불교계에 미치는 결과가 과연 어떨지 상당히 주목할만하다.”¹³ 고 기술하고 있다. 12번의 고야산별원의 승려는 조선의 승려 결혼을 수용해야 하는 견해이지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¹⁴ 반면, 일련종 보국사 승려의 10번의 기고문에서는 조선의 승려 결혼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일본 내지에서도 승려의 재산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승려 결혼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불교와 달리 단가제도가 없는 조선에서 이를 공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일본불교의 승려 결혼 문제점을 미리 들여다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¹⁵ 16번 유만겸 학무국 종교과장의 기고문은 사법 개정에 따른 승려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법 개정은 총독부 행정기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조선불교계 승려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서두에 명시하고, 조선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종교가 되어야 하는데, 승려의 결혼도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기고문은 ‘승려계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시대적 추이와 종교가의 생활’, ‘청정한 지계승은 더욱 존경받아야 한다’, ‘조선 승려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라는 소제목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는

12 中村三笑, 「朝鮮僧侶の肉食妻帯に就て」, 『朝鮮佛教』 제27호(1926), 3-4쪽.

13 後藤瑞嚴, 「朝鮮佛教界に及ぼす結果が注目に値せん」, 『朝鮮佛教』 제27호(1926), 17쪽.

14 澤光範, 「必要にあらず止むを得ざるなり」, 『朝鮮佛教』 제27호(1926), 22-23쪽.

15 逸見通漢, 「即行は時期尚早ではないか」, 『朝鮮佛教』 제27호(1926), 18-19쪽.

지계승(持戒僧)의 중요함과 함께 조선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물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¹⁶

한편, 다음의 표2는 승려 결혼과 관련된 제28호 기고문 목록이다. 제27호의 내용보다는 그 수가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2-『조선불교』 제28호에 승려 결혼 관련 기고문(1926)

	기고자	제목
1	佐藤稠松	親鸞とルーテル-東西両教の改革と妻帯問題(신란과 루터-동서양교 개혁과 처대문제)
2	金剛比丘 英虎	噫、朝鮮佛教の末路(아, 조선불교의 말로)
3	大乘寺 具萬化	その罪三千大千世界に唾棄する處無し(그 죄 삼천대천세계에 타기할 곳이 없다)
4	雲峯山人 釋時鏡	妻를 置하고 肉을 食하는 승려계에 대하여(한글 기고문)
5	京城本派本願寺 別院金連聲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ー私は朝鮮僧侶の肉食妻帯の實現を渴望します(얼마나 고귀한 문제인가-나는 조선 승려의 육식처대 실현을 갈망합니다)
6	梁山 金蓮湖/朴大奎	彼は全鮮仏教の病魔である(그들은 전선불교의 병해다)
7	九月山人 全日源	僧侶帶妻肉食에 對하야(한글 기고문)

제28호 기고문의 특징은 승려 결혼 논쟁 범위를 확대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글이 등장한 점이다. 이것이 1번의 기고문으로 승려 결혼에 대해 루터라는 종교학자 또는 신란이라는 정토진종 창시자의 말을 인용하고, 종교도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승려 결혼 문제를 여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¹⁷ 그 외 기고문은 조선인들의 반대 입장을 파력한 글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16 榎萬兼, 「宗教行政の立場から」, 『朝鮮佛教』 제27호(1926), 31-32쪽.

17 佐藤稠松, 「親鸞とルーテル-東西両教の改革と妻帯問題」, 『朝鮮佛教』 제28호(1926), 13-15쪽.

제29호 기고문은 아래 표3과 같이 5개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도 대부분이 조선인 기고자로 유일하게 한 명의 일본인의 글이 확인된다.

표3-『조선불교』 제29호에 승려 결혼 관련 기고문(1926)

	기고자	제목
1	吳官守	奇怪な天物が東亞に横行する(기괴한 요물이 동아에 횡행한다)
2	八公山八聖庵 韓鐘秀	吾が佛教の大賊である(우리 불교의 대적이다)
3	姜泰秀	禪教兩宗の區別を明らかにせよ(선교양교 구별을 명백히 밝히어라)
4	金剛比丘 英虎	噫、朝鮮佛教の末路(아, 조선불교의 말로)
5	川村五峯	オレは寺に居る間は断じて妻帯せぬードクトル渡邊海旭和尚のこと(나는 절에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처대를 하지 않으리라"라는 와타나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여전히 후카가와(深川) 사이코사(西光寺) 주직으로 청교도적인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 와타나베의 생활을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¹⁸ 와타나베의 사례 소개는 글쓴이의 승려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번의 가와무라 고호는 정토종 와타나베 가이쿄쿠와 같은 저명한 승려를 사례로 승려 결혼과 관련하여 소개하는데 그가 존경하는 와타나베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결혼 그 자체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으나 적어도 절에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처대를 하지 않으리라”라는 와타나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여전히 후카가와(深川) 사이코사(西光寺) 주직으로 청교도적인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 와타나베의 생활을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¹⁸ 와타나베의 사례 소개는 글쓴이의 승려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 川村五峯, 「オレは寺に居る間は断じて妻帯せぬードクトル渡邊海旭和尚のこと」, 『朝鮮佛教』 제29호(1926), 25쪽.

III. 승려 결혼에 대한 조선불교 관계자의 반응

1. 승려 결혼 ‘반대’로 언급된 기고문

먼저, 승려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기고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광식이 언급한 기준에 따라 제27호-제29호의 내용을 재정리하면 표4와 같다. 주로 사찰에 몸담은 개인이 투고한 내용이 대부분인듯하다. 이하에서 이들 내용을 김광식이 언급한 내용을 비교고찰하는 식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표4-조선불교 관계자의 반대 입장

	기고자	기고문 제목
1	任海峰	須らく僧位を捨てよ一佛戒を汚すの行為は許すべからず— (당연히 승위를 버려라—불교를 더럽히는 행위는 허락할 수 없다)
2	釜山 金松月	朝鮮佛教僧侶の破戒的運動(조선불교승려의 파계적 운동)
3	小白頭陀 安錫淵	釋尊의 嫡子로 娶妻食肉이 可乎야아—時代已晚이다.(한글 기고문)
4	金剛比丘 英虎	噫, 朝鮮佛教の末路(아, 조선불교의 밀로)
5	大乘寺 具萬化	その罪三千大千世界に唾棄する處無し(그 죄 삼천대천세계에 타기할 곳이 없다)
6	雲峯山人 釋時鏡	妻를 置하고 肉을 食하는 승려계에 대하여(한글 기고문)
7	梁山 金蓮湖/朴大奎	彼は全鮮佛教の病毒である(그는 전조선불교의 병해다)
8	九月山人 全日源	僧侶帶妻肉食에 對하야(한글 기고문)
9	八公山八聖庵 韓鐘秀	吾が佛教の大賊である(우리 불교의 대적이다)
10	姜泰秀	禪敎兩宗의 区別を明らかにせよ(선교양교 구별을 명백히 밝히어라)
11	吳官守	奇怪な天物が東亞に横行する(기괴한 요물이 동아에 횡행한다)

1번의 임해봉의 기고문에 대해 김광식은 “당시 경성에 있던 임해봉은 대처식육의 허용은 불계를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당시 불교계에서 그러한 논의 자체를 제기하고 있는 부류들은 염심(廉心)도 없는 대상이라

지적하면서 그러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이에 그는 그 허용 운동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조선불교를 위해서는 용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기고문을 인용하고 있다.¹⁹ 이 인용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승려의 결혼과 고기를 먹는 행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임해봉의 강한 어조가 전달되며, 이는 곧 자연스럽게 승려 결혼을 반대하고, 총독부 사법 개정 정책에 항거하는 항일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임해봉의 같은 기고문 앞쪽 내용을 참고하면, 조선총독부의 30 본산 체제와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조선불교는 신라, 고려 시대에는 매우 융성하였으나 이조에 들어온 이래 불교에 억압을 받았기에 점차 쇠퇴해갔다. 그러나 총독정치로 되어 30 본산을 공인받고 불교를 해방하는 것은 불교를 위해 기쁜 일(강조점-필자)이었지만 근래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 승려 간에 육식처대 공인을 희망하여 당국을 향해 운동하는 자가 있는 것을 듣고 그러나 이 일이 실현된다면 조선불교를 위해 어려운 문제라 실로 슬픈 일이다.²⁰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시행과 30 본산 체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불교를 식민지 정책에 유리하게 통제하기 위한 근대적 장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임해봉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강조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가 30 본산으로 조선사찰을 공인하고 불교를 해방해주어 기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가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임해봉이 조선총독부의 조선불교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9 김광식, 앞의 논문(1997), 211쪽.

20 任海峰, 앞의 글(1926), 11-12쪽.

승려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를 공식화시키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불교 정책 자체에도 강한 저항을 보이는 것이 현재의 관점에서 당연한데, 임해봉의 상반된 견해는 그러한 시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그의 승려 결혼에 대한 반대 견해 하나만 부각할 때 자칫하면 그를 항일이라는 카테고리에 쉽게 배치할 수 있을 터인데, 적어도 이 기고문에서 임해봉은 친일과 항일의 경계선상에 서서 조선불교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한편, 부산 김송월의 2번 기고문에 대해서 김광식은 “승려 대처식육의 용호론은 승려의 파계 운동이라고 전제하면서, 파계를 조장하는 승려들은 교계에서 도태시켜야만 하고 대처식육은 실현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²¹라고 그의 말을 인용한다. 물론 김광식이 인용한 것처럼 김송월 역시 조선의 승려 결혼에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김송월은 “오늘날 동서를 막론하고 전 세계, 전 사회, 전 종교단체가 모두 각자 이구동음(異口同音)으로 문명 진화를 주창하는 때에 우리 조선불교는 유일하게 문명을 뒤로 하고 있다”라고 문장을 시작하는데 조선불교계의 시대적 낙오를 우려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승려 결혼의 반대 의지를 보인 이들은 기존에 해왔던 산중불교, 참선 등의 전통적 조선불교의 모습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김송월은 이와는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지들의 파계적 모습에는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전조선불교 대표의 미명(美名)을 맹세하고 31인의 승려 등은 통속적 불교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물욕 방면에만 쟁진(爭進)하고, 혹은 처대를 하고 주직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 재임을 위해 이혼 신청을 하는 자가 있다. 또한 출가에서 금지하는 음주, 육식, 흡연 등을 하여 파계하는 자가 있고,

21 김광식, 앞의 논문(1997), 211쪽.

이미 본산 주직이 이러하니 해당 절도 마찬가지로 문란(紊亂)한 풍기(風紀)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불법(佛法)인가. [...]

내지 불교 승려는 학문과 도덕을 수양한 후에 일산(一山)의 주직 자리에 오르면 숙불환생(熟不還生)²²하지만, 어떤 점까지는 무모하다 할지라도, 조선의 지금 승려는 학문과 도덕은 문외시하고 난행(濫行)만은 타의 선두가 되어 실시하는 이는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과 같고, 또 이층집을 짓는 데 먼저 이층을 짓는 것과 같다.²³

조선불교의 폐단, 그중에서도 승려 결혼과 음주, 육식 등을 지적하면서, 일본불교를 좋은 사례로 언급하는 김송월의 견해 역시 오늘날 근대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연결성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승려의 결혼문화는 일본불교에서 이식된 것으로, 이로 인해 조선불교의 일본불교화가 급속도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불교 승려를 본반을 것을 강조하는 김송월의 생각은 필자 역시 그 이유에 의문이 든다. 분명 조선불교의 선진화를 갈망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본불교는 조선불교의 좋은 본보기로 간주하고 있다. 필시 그 대상인 일본불교가 통상적인 일본불교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진종계열 외 그때까지 교단에서 승려 결혼을 공인하지 않은 일본불교 종파를 일컫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실제 일본에서 일본불교의 승려 결혼이 확산하기 시작한 시기가 1930년대 후반이고²⁴, 일본불교계의 승려 결혼 논쟁이 각 종파를 둘러싸고 1940년 전까지도 이어졌다는 사실은²⁵ 이 점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여하튼

22 이미 악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3 金松月, 「朝鮮佛教僧侶の破戒的運動」, 『朝鮮佛教』 제27호(1926), 16쪽.

24 일본에서는 1937년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일본 승려가 결혼을 하게 된다. 마이카 아워백, 앞의 논문(2008), 16쪽.

25 일본불교의 최대 승려의 공인은 1872년 메이지 정부의 ‘육식처대승수령(僧侶の内

김송월은 승려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일본불교에는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역시 앞서 임해봉처럼 승려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여 친일의 반대편에만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드물게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된 3번의 안양연 기고문에 대해서도 김광식은 승려 결혼 반대의 카테고리에 포함하여 논하고 있다. 김광식은 “석가의 제자로서 승려 결혼과 식육을 옹호하는 것은 佛祖의 慧命이 단절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그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안양연의 말을 언급한다. 또한, 승려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승려를 구분하여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른바, 분지승(分持僧), 보통승려(普通僧侶), 가장승(假裝僧)으로 구분하여 그 역할에 임할 것을 덧붙인다.²⁶ 김광식의 이런 인용과 반대로, 안양연의 동일 기고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내용도 확인된다.

현대 승려에게 지계(持戒)를 강요하면 그나마 가람(迦藍)을 수호할 자 없을 것이고, 또는 허위 이혼 불의아(不義兒)의 압살(壓殺), 강간(強奸), 간화(奸利) 등 죄악만 봉기하리니, 차라리 칩과 처를 공인한 후 가람을 수호케 하여 명자(名字) 불교라도 이를 유지하여, 각종 죄악을 미연에 사절함이 위정자의 부득이한 계책(計策)이라 할 수 있다.²⁷

食妻帶勝手たるべし’ 이후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일본불교 종파가 바로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 1917년의 당시에도 진종 외의 각 종파가 공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일본불교에게도 승려의 결혼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栗山泰音, 『僧侶家族論』(櫻樹下堂, 1917)). 이와 같은 논쟁은 1939년까지도 이어졌다(上坂倉次, 『僧侶妻帶の諸問題』(明治佛教研究会刊, 1939)). 이러한 측면에서 1926년 당시 김송월은 진종 외 승려 결혼 공식 인가를 하지 않은 일본불교 종파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6. 분지승은 지계하는 승려고 즉 청정비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사찰의 중심으로 삼자는 것이며 보통승려와 가장승에게는 대처식육을 허락하고 그 대신 그들을 사찰의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인용문을 포함하여 김광식, 앞의 논문(1997), 211쪽.

이처럼 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안양연은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너무 강조할 시 사찰을 수호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오히려 승려 결혼을 공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양연의 주장은 승려 결혼의 반대 견해도 포함함과 동시에 승려 결혼 문제를 공인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걱정도 역력하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 사찰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승려 결혼도 하나의 좋은 방안 또는 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양연의 입장 역시 단순히 승려 결혼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조선불교의 발전 방향을 더 모색했고, 이를 승려 결혼에서 방안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금강비구라 자신을 밝히고 있는 영호의 기고문으로 그는 이 잡지와 관련하여 총 4번의 기고문을 내고 있다.²⁸ 특히 이 기고문들에 대해 김광식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이 승려 결혼 반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약해서 인용하자면, “부처는 살생금지를 제일의 계율로 정하였는바 승려가 육식을 하는 것은 바로 부처 제일의 규율을 어기는 것인데 승려가 그 계율을 이행치 않는 근본 원인은 대처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 “대처 승려가 사찰의 주직에 배치되고 동시에 통속적 불교로 전환하려는 것은 곧 사원과 승려의 명칭을 들을 수 없는 현실이 올 것이다”, “대처식 육을 행하려면 산문에서 나가 청진사로 생활을 하지 무슨 이유로 사원 내에 거주하면서 향락적 생활을 하려는 것인가”, “대처식 육을 허가한다면 청정한 사원은 마을로 변하고 불교는 멸망에 이를 것이며 다시는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승려 결혼을 막을

27 安錫淵, 「釋尊의 嫡子로 娶妻食肉이 可乎아呀-時代已晚이다」, 『朝鮮佛教』 제27호 (1926), 25쪽.

28 28호, 29호의 기고문 외에도 그는 동일한 제목으로 31호, 32호에도 투고하고 있다.

방도가 없다 하여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몇 개의 본말사에는 대처 승려를 거주케 하고, 또 몇 개의 본말사를 정하여 무처(無妻) 승려들을 거주케 하여 계를 지키고 수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처 승려가 대처 승려로부터 축출되어 하산하거나 방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한 조처는 불교의 장래를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다.²⁹ 이와 같은 영호의 기고문 속에서는 승려 결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느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처승 주도권 장악으로 밀려 나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비구승의 불안감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조처는 불교의 장래를 위해서도 타당하다.”라는 언급처럼 대처승과 비구승의 양립이라는 타협을 제시함으로써 공존 내지는 상생을 통한 조선불교의 미래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편, 영호는 이러한 승려의 결혼 반대 목소리와 함께 불교에서 바람직한 승려 모습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당시 승려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이들이 조선불교에 대한 인식, 참된 승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영호는 기고문의 첫 문장을 “승려라는 것은 우주만유(宇宙萬有)를 평등화하고 인간 본위의 진가치를 발현하여 궁고휘천(亘古輝天)의 진리를 오증(悟證)하여 우주 자연법칙을 초월한 점에서”³⁰라고 말하면서 문장을 시작한다. 나아가 “종교에 헌신자임과 동시에 의표(衣表)행동 모든 것이 세인(世人)과는 전혀 다른 것이 사실”이라 언급하면서, 올바른 승려의 모습은 “산중(山中)에서 수도(修道)하고 불계를 엄수하고 처대(妻帶)를 이루지 않고, 음주육식을 절금(絕禁)하여 계행(戒行)이 청정하고 자비와 도덕으로 밭고홍락(拔苦興樂)하고, 부세도속(扶世道俗)

29 여기까지의 인용문은 김광식이 영호의 글을 인용한 것을 정리하였다. 김광식, 앞의 논문(1997), 215-216쪽.

30 英虎, 「噫, 朝鮮佛教の末路」, 『朝鮮佛教』 제28호(1926), 16쪽.

에 해당”하고, “승려가 산중에서 수도하고 사원이 궁곡(窮谷)에 폐재(避在)하여 처대와 육식을 금하는 것은 그 법규가 삼천여 년 석가모니불 이전부터 전해져 온 엄규(嚴規)다.”라고 언급한다. 또한,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불교는 초인적인 정신생활의 주뇌자(主腦者)임과 동시에 체험자이고 깨끗한 신앙생활의 경천자(經踐者)임과 동시에 위주자(爲主者)이다. 따라서 모든 환경이 신비적이고 승엄적이다.”고 논한다.³¹

이처럼 적어도 영호가 생각하는 불교라는 종교와 이 종교의 주요 인물인 승려라는 존재는 초현실적이고 신비롭고 승엄적인 종교와 인간으로, 이러한 종교와 이를 믿는 자가 결혼을 하고 고기를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조선불교의 문명화를 강조한 김송월과는 정반대의 견해다. 유사하게 승려 결혼을 반대하는 생각을 견지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조선의 불교, 승려의 모습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승려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보이는 이들을 ‘친일-항일’ 프레임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

5번의 구만화 역시 승려 결혼 반대에 선 인물로, “처자를 사원에 거주케 하고 육식을 자행하는 것은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며, 당국에서도 파계승의 종용에 따라 법률상으로 시인하는 것은 조선불교가 지켜온 계율을 무시하는 것”이라 말한다. 김광식은 이러한 구만화의 언설을 승려 결혼 반대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구만화는 “당국자요, 존중한 태도와 처치(處置)를 취하라. 그래도 승려에게 취처(娶妻)를 허한다면 무처(無妻)승려 4천 대중에게 몇 개의 본말사를 선정하여 안주시키게 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조치라 생각한다.”라고 언급한다.³² 승려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31 英虎, 앞의 글(1926).

32 具萬化, 「その罪三千大千世界に唾棄する處無し」, 『朝鮮佛教』 제28호(1926), 19쪽. 김광식, 앞의 논문(1997), 212쪽.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영호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반대 의견이 현실과 절충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조금씩 보이고 있었다면, 6번의 석시경의 기고문에서는 강렬한 반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결혼한 승려는 사찰을 떠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광식의 인용한 말을 빌리면 “처자를 부양하고 육식을 행하는 것은 불교 전체를 패습(敗習)으로 만드는 전제하에 청정하였던 사원이 주육(酒肉)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개탄하였다. 그는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처재(妻財)를 사영(私營)하며 주육을 자행하는 승려는 반성하고 사찰의 제반 일들은 학행(學行)이 모범적인 승려에게 위임하고 산간에서 물러나 속가로 퇴귀함이 마땅하다고 갈파하였다.”³³고 언급하였다. 또한, 석시경은 이 기고문에서 “공익상 의무가 있는 승중은 절 한구석에 거하여 처를 취득(娶得)한 과실이 있거든 비구계를 대중 앞에 환상하고 궁(躬)을 성(省)하며 죄를 염(念)하여 중대한 임무를 경대(經帶)치 말 것이로다.”라고 언급한다.³⁴ 승려 결혼을 결코 허락 할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김연호와 박대규는 7번의 기고문에서 승려 결혼 현상을 조선불교의 병해로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선종과 교종의 역할을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1. 선종 승려는 수양 참선(修養參禪)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홍도제중생(弘度濟衆生)을 목적으로 할 것.
2. 교종 승려는 포교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동시에 홍도 중생을 목적으로

33 釋時鏡, 「妻를 置하고 肉을 食하는 승려계에 대하여」, 『朝鮮佛教』 제28호(1926), 19–20쪽. 김광식, 앞의 논문(1997), 212쪽.

34 釋時鏡, 위의 글(1926), 20쪽.

할 것.

3. 현재 선교 양종 승려에 대하여 육식처대를 하는 자 대다수이지만 자기 계행(戒行)을 엄수하지 않는 자는 교역자(敎役者) 임무를 할 수 없고 교계로부터 격리할 것.
4. 승려로서 추태를 나타낼 시는 염별에 처하고 교계에서 축출(逐出)하며 부정한 행위를 행하는 자도 교계에서 영구히 매장할 것.
5. 선종 승려는 청정한 사원에서 수행하고 교종 승려는 주로 도회지에서 민중과 접촉하고 포교 전도에 임할 것.
6. 양종 합치하여 국제적 선교사를 양성할 것.
7. 양로원을 설립하고 연로쇠약(年老衰弱)한 승려를 구조할 것.³⁵

이에 대해 김광식은 “이 방안도 기본적으로는 승려들의 대처식육과 부정 행위는 단호히 엄단하면서도 사회 변화에 맞는 승려 및 불교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위 대안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선종의 이미지는 [수양, 참선, 사원-비구승]이고, 교종의 이미지는 [포교전도, 도회, 민중-대처승]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승려 결혼을 반대하는 자는 수양, 참선, 사원에 체재하는 비구승의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고, 반대로 찬성하는 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포교 전도, 도회, 민중(사회화) 등 사회, 일반 대중과 가까운 대처승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당시 조선불교계의 승려 결혼의 찬반을 가르는 승려 모습의 척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적 선교사 양성에서는 협력하는 부분도 보인다. 또한 양로원 운영과 같은 사회사업도 일부 확인된다. 승려 결혼, 육식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그 대안에서는 조선불교의 사회화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앞서 언급한 승려와 초현실성을 강조한 영호와는

³⁵ 金蓮湖·朴大奎, 「彼は全鮮仏教の病魔である」, 『朝鮮佛教』 제28호(1926), 24쪽.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글로 작성된 전일원의 8번 기고문에서는 “만일 승려의 태도를 변하여 대처육식하거나 생자치산(生子治產)하면 이는 승수(僧數)에 자퇴하고 세속에 자귀(自歸)할지언정 법률에 따라 변함은 아니로다.”³⁶ 고 언급하면서, 자신은 절대 승려 결혼, 육식이 불가함을 단호히 언급한다. 또한 9번의 한종수는 승려 결혼을 하는 승려는 대적(大賊)이라 단언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고³⁷, 10번의 강태수는 승려 결혼과 육식 해방은 석존을 말살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선교 양종의 종지가 다름과 함께 염연히 양종의 구별을 분명히 할 것을 희망한다.”³⁸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관수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승려로 이 문제는 중대한 일로 충분히 논하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하면서 조선불교의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주지는 삼포(三浦)[사원의 하급승]을 하시(下視)하고 삼포는 주지를 증오하고 직원은 대중을 멀리하여 대중은 직원, 사무원(寺務員)을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직원과 대중 간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³⁹

그러면서 조선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1. 사내(寺内)가 화목(和睦)할 것.
2. 본말사가 단결할 것.
3. 중앙기관이 충실할 것.

36 全日源, 「僧侶帶妻肉食에 對하야」, 『朝鮮佛教』 제28호(1926), 25쪽.

37 韓鐘秀, 「吾が佛教の大賊である」, 『朝鮮佛教』 제29호(1926), 20쪽.

38 姜泰秀, 「禪教兩宗の區別を明らかにせよ」, 『朝鮮佛教』 제29호(1926), 21쪽.

39 吳官守, 「奇怪な夭物が東亞に横行する」, 『朝鮮佛教』 제29호(1926), 19쪽.

4. 악마(惡魔)의 허위(虛偽)를 탈피할 것, 아상(我相)을 파괴할 것.
5. 불타(佛陀)를 위해 희생할 것.

김광식 역시 여기에 나온 오관수의 대안을 논문에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 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오관수의 이러한 대안 제시는 불교계가 지향해야 할 대상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그 내용 중 악마의 虛偽를 탈피한다는 것은 승려의 대처식육이라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처식육의 형태가 자행되고 있는 我相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에서 나타나듯이 대처식육이 논란되는 현실 자체를 극복하려는 의지라 하겠다.⁴⁰

필자가 확인한바, 오관수는 위 인용문 4번의 항목에 대해 이 기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4번의 내용이 김광식이 언급한 결혼한 승려와 결부 지을 수 있는지 어떤지 의문이 든다. 또한, 오관수는 일본대학으로 유학한 승려다. 김광식이 승려 결혼의 반대 카테고리에 오관수 기고문을 배치한 이유 역시 궁금하다. 오늘날의 근대 역사 인식에서는 늘 유학승과 결혼한 승려인 대처승은 같은 선상에 나열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관수는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미리 독자 제씨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본 문제(승려 결혼-필자)는 중대하여 충분히 논거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과 다사다난한 과거 일절을 뒤돌아보지 않고 현재에서 미래만을 논하고자 한다(오관수)⁴¹

40 김광식, 앞의 논문(1997), 213쪽.

41 吳官守, 앞의 글(1926), 18쪽.

이 내용처럼 이 기고문에서는 오관수가 승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중앙기관(중앙교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로 조선불교가 도약할 기회라 생각하고 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 기고문에는 승려 결혼과 관련된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 김광식이 어떤 이유로 오관수의 글을 승려 결혼과 결부지어 논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이 기고문은 승려 결혼 문제와는 무관한 것 같다. 여기에서 ‘악마(惡魔)의 허위(虛偽)를 탈피할 것, 아상(我相)을 파괴할 것’은 조선불교의 잘못된 폐단을 비유하면서 거기에서 승려들이 벗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⁴²

2. 승려 결혼 ‘찬성’으로 언급된 기고문

다음으로 승려 결혼 논쟁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라 소개된 기고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5와 같다. 김광식은 논문의 ‘대처식 육에 대한 긍정 및 옹호의 논리’라는 소제목에서, 이흔성, 홍진혁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마이카 아워백은 이들에 추가해 경성

표5-조선불교 관계자의 찬성 의견

	기고자	기고문 제목
1	中央教務院 李混惺	朝鮮佛教の興廢は何の関係もない(조선불교의 흥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2	京城 洪鎮赫	朝鮮佛教の復興は耳朶的な覚醒と僧侶の人格向上に在る(조선불교의 부흥은 시대적 각성과 승려의 인격향상에 있다)
3	京城本派 本願寺別院金連聲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私は朝鮮僧侶の肉食妻帯の實現を渴望します (얼마나 고귀한 무제인가—조선승려의 육식처대 실현을 갈망합니다)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얼마나 고귀한 문제인가)

42 吳官守, 앞의 글(1926), 19쪽.

본원사별원 김연성을 추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사람의 기고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이흔성은 승려 결혼을 반대하는 백용성 전백서에 대해 제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기고문치고는 단문이라 전문을 인용한다.

백용성씨 일파의 전백서에 대해서는 난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아직 논할 어떠한 가치도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또 교계에 흥론(興論)을 환기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에 전백서까지 제출할 필요도 없고 승려 자신이 삼가야 할 문제로 결국은 개인의 자유인 것이다. 육식처대로 조선불교 쇠퇴의 원인이 되고 또 이 금지로 부흥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불교는 지금 사회화되고 민중화되고 있다. 과거의 시대처럼 승려 자신만의 불교도 아니고 일반적 신앙인 보편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 육식처대 금지 등을 말하지 않아도 승려로서 청렴한 신앙과 수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좋은 양심의 명명(命名)이 있을 것이다. 지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권력으로 억압한다든가, 법률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신앙의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지금 더구나 육식처대 금지 운운은 완전히 오해로, 또 시대적으로 자각이 없는 우견(愚見)이다. 그러나 그것이 법규로 금지된 마당에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는지는 크게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금지하지 않고 해방한다 한들, 결코 일반적인 해방이 아니라 자신의 신심 수양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전백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성찰하여 덕을 길러 신심을 깨끗이 하고 계를 지키는 진실 무결의 승려가 되었으면 한다.⁴³

위 이흔성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김광식과 마이카 아워백 모두 부분적으

43 李混惺, 「朝鮮佛教の興廢は何の関係もない」, 『朝鮮佛教』 제27호(1926), 13-14쪽.

로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참고로 아위백은 단순한 인용에 그치고 있다. 반면, 김광식은 “이러한 입장은 결국 대처식 육의 긍정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유점사 공비 유학생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의 성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김광식은 승려 결혼과 유학승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데, 이는 앞서 유학승인 오관수에 대한 평가와 또 다른 견해다. 같은 유학승이라도 오관수는 반대 카테고리에서 소개하였고, 이흔성은 찬성의 카테고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흔성의 기고문에서는 불교라는 종교의 사회화, 민중화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그의 지적처럼 불교는 더는 승려만의 종교가 아니고, 일반적 신앙인 보편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 승려 결혼과 육식과 관련된 계율은 법률로 제재한들 제재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승려 자신의 종교를 믿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려 자신의 문제를 굳이 건백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흔성의 언설은 단순히 승려 결혼 옹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조선불교의 사회화, 대중화, 민중화로 진보하기 위해서 승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흔성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는 것이 홍진혁의 글이다. 그는 2번 기고문에서 승려의 존재 및 그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데 승려 결혼 및 육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승려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점에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논한다. 그러면서 승려가 인류 사회 일원으로 사회생활의 한 개체임을 강조하면서 승려도 사회의 하나의 기능임을 언급한다. 나아가 승려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승려를 어떤 특수한 유한(有闕)계급으로 보고 승려는 세간을
지옥으로 보는 것처럼 불출산문의 은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 냈다. 즉, 사회를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산림에 은복하고 있었던 지루한 사상으로 절망적인 염세관이다. 승려의 육식처대 금지 운운은 이러한 사상의 여파로 고기를 먹고 처를 가진다는 것을 대단한 파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이라는 것, 살생 즉 파계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고기를 먹는 것만이 살생인가? 생물, 무생물에 불문하고 그 생명을 죽이고 파손하는 것은 모두 살생이다. 육식뿐만 아니라 채식도 살생이다.⁴⁴

홍진혁의 살생과 관련된 생물, 무생물에 대한 논리는 현재의 불교 살생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흥미롭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승려 결혼과 육식과 파계와의 관계다. 일반인들은 승려를 산중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유한계급으로 인식하고, 승려 또한 산중에 벗어난 일반인들의 삶, 즉 세간을 지옥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승려가 불출산문의 은둔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사는 삶인 세간에 속해버린다면 이것이 파계로 성립된다. 또한 고기를 먹는 것도 세간에서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살생과 연결되므로 파계가 된다. 이른바 사회 변화와 무관하게 승려 결혼과 육식은 파계라는 사상이 이미 내재한 가운데 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진혁의 이러한 견해가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근대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유학승, 대처승과 같은 일본불교와 친숙한 조선의 불교 관계자를 이미 친일의 개념으로 장착한 채로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진혁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사회 변화에 편승하면서 조선불교의 부흥책을 승려의 인격에 중점을 두고 산림불교에서 민중불교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광식은 “그는 승려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입장에서 대처식육 문제를

44 洪鎮赫, 「朝鮮佛教の復興は耳朶的な覚醒と僧侶の人格向上に在る」, 『朝鮮佛教』 제27호(1926), 21쪽.

언급하면서 승려에 대한 존재를 다음의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인간의 본능적 생활은 원시인 아래 변화하지 않았다. 둘째, 육체는 활동과 가치의 원천이다. 셋째, 승려도 인류사회의 일원이다. 넷째, 인간을 위한 教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승려의 대처식육의 문제를 언급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대처식육은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홍진혁이 주장하는 바로, 승려가 고기를 취하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옹호 논리를 간단히 지적할 순 있으나 홍진혁의 승려를 바라보는 시각, 조선불교에 대한 견해 등, 주요 관점을 언급한 뒤 옹호의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김연성의 3번 기고문 ‘나는 조선승려의 육식처대의 실현을 갈망합니다’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본원사 승려로서, 또는 조선인으로서 노골적으로 가장 승려 결혼을 찬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같은 제목으로 두 차례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는데, 승려 결혼과 육식을 고귀한 것이라 언급할 정도이다. 심지어 “나는 이 육식처대의 종교가 아니었다면, 불교도 불법도 모른 채 무한의 괴로움에 빠졌을 것을, 신란 성인의 육식처대 종교와 만남으로 현재 이세의 과보가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세가 되었다. 나는 늘 조선 승려의 육식처대 실현을 갈망한다.”라고 언급할 정도이다.⁴⁵ 나아가 두 번째 기고문에서는, “이 말법시대에 사회 가정을 떠나 산림불교가 어떻게 하여 인류를 교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육식처대 문제에 반대하는 원인은 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나, 불법자로서 계율을 파괴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법률을 어기는 것과 같이 패씸하기 짹이 없는 일이고, 실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그것이 원활히 가능했던 것은 신란이 시대적 상황에 잘 부합하였

45 金連聲,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一私は朝鮮僧侶の肉食妻帯の實現を渴望します」, 『朝鮮佛教』 제27호(1926), 28~29쪽.

고, 일본 승려들은 이런 상황에 편승하여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며, 또한, 진종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하기에 “산림불교를 사회로 끌어들이고 사회적 불교로 가정적 종교로” 이어지고 “그것이 진종 이외의 승려도 육식처대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언급한다.⁴⁶ 일본불교 종단에 몸을 담고 있어 그런지 승려 결혼과 육식의 찬성을 진종과 신란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주장하는 것은 다른 기고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분명 다른 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김연성의 지적이 일본인, 일본불교, 조선총독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대체로 지식 여하를 불문하고 품행 여하와 무관하게 조선인보다 훨씬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왕왕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인신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한 나쁜 벼룩을 깊게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로서는 어느 정도 교육이 발달한들 점점 세상이 악화되어 갈 뿐 진실한 문명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다.⁴⁷

마야카 아워백 역시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아래 김연성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많은 수의 일본인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첫 만남에서는 신중함과 친절함을 보여주었지만 두세 번 더 만나게 되면 오만방자함을 보였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여봐라고 불렀을 때 내가 응이라고 대답하면 화를 낸다. 내게 어떤 말이 쏟아져도 예예 하며 자기들의 말에 복종만 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노예처럼 다루고자 하는 것이 금방 보인다.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는 내가 일본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큰 괴로움이 되어 어쩔 도리가 없다.

46 金連聲,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 『朝鮮佛教』 제28호(1926), 22쪽.

47 金連聲, 「知識人と私(二)」, 『朝鮮佛教』 제39호(1927), 24쪽.

왜냐하면 일본어를 몰랐더라면 그러한 것은 알지 못한 채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⁴⁸

이러한 김연성의 지적에 대해 마이카 아위백은 “김연성의 빼어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에 유창하다는 것은 칼날의 양면을 지니고 있었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은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김연성의 경우는 진정한 신앙을 찾는 기회를 잡은 것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들을 일본식 수직적 관계 속에 보다 깊이 빠뜨리고 식민 질서 속의 차별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만들었다. 위의 인용글에서 보듯 김연성에게 차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인 주민들과 대화할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었다”라고 논했다. 이처럼, 김연성처럼 승려 결혼에 큰 찬성 견해를 보이는 인물조차,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과 정반대의 생각들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맷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불교』에 나타난 승려 결혼을 둘러싼 조선인의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선행연구와 대조하면서 고찰하였다. 승려 결혼에 대하여 찬성(친일)과 반대(항일)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기고문을 살펴본다면 찬반이 뒤엉킨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임해봉, 김송월처럼 승려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총독부, 일본불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승려 결혼에 반대하면서

48 마이카 아위백, 앞의 논문(2008), 33-34쪽(원문은 金連聲, 위의 글(1927), 24-25쪽).

도 안양연처럼 오히려 지계의 문제를 역으로 승려 결혼으로 해결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승려 결혼이 공식화되었을 경우,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선종과 교종의 구분처럼, 대처승과 비구승의 본말사를 별도로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이들이 상정하는 올바른 승려, 불교의 모습은 영호가 언급했듯이 초현실적이고 신비롭고 숭엄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산중 사원에서 참선을 하고 수양하는 비구승의 모습인 것이다. 그 반대가 도회에서 포교전도를 하고 민중과 함께하는 대처승이었다.

한편, 반대편에 서 있는 승려보다 결혼을 찬성하는 수는 훨씬 적었다. 이혼성처럼 승려 결혼 문제를 조선불교의 사회화, 민중화, 보편적 종교와 연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승려 결혼과 파계와의 관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홍진혁은, 승려가 고기를 취하고 결혼하는 행위 자체에는 이미 파계라는 사상을 내재시켜 놓았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견해에 필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학승=대처승’의 도식은 적어도 이『조선불교』기고문들에 있어서는 김광식이 찬반으로 양분한 기준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유학승은 승려 결혼에 반대하고, 어떤 유학승은 찬성하면서 그 논리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디 ‘유학승=대처승’이 잘못된 구도인 것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모든 승려가 결혼한 승려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수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 이 시점에서 유점사 이혼성의 호적등본을 확인하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몸이었다.⁴⁹

49 이혼성의 호적등본은 그가 주지취직인가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서류는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에서 확인된다. 「榆岐寺住持就職認可ノ件」, 『寺刹住持就職認可 本末寺法中改正 其他에 關한 件』, 825쪽.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Event.do?id=0001565465&docid=0027157328>, 열람일 2021.9.17).

물론, 김광식이 이들을 언급하면서 ‘친일-항일’의 프레임에 넣어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쉽게 ‘친일(대처승)-항일(비구승)’로 자연스럽게 배치해버린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근대 역사 인식을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 왔고, 이를 쉽게 부수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불협화음은, 당시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친일불교, 왜색불교라 불린 한국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재인식하고, 결혼한 승려들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역사적 관점에 본 연구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朝鮮總督府, 『寺刹住持就職認可 및 本末寺法中 改定의 件』. 1926.

朝鮮總督府, 『寺刹住持就職認可 本末寺法中改正 其他에 關한 件』. 1927.

2. 단행본

栗山泰音, 『僧侶家族論』. 東京: 櫻樹下堂, 1917.

上坂倉次, 『僧侶妻帶の諸問題』. 東京: 明治佛教研究会, 1939.

3. 논문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과 백용성의 전백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1집, 1997, 213-249쪽.

마이카 아워백, 「‘친일불교’ 역사학의 재고: 조선불교단과 1920년대 조선에서의 승려결혼에 대한 논쟁」. 『아세아연구』 제51권 3호, 2008, 15-53쪽.

박재현, 「근대 불교의 대처식육 문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철학』 제93집, 2007, 47-70쪽.

윤기엽, 「일제강점기 朝鮮佛教團의 연원과 史的 변천: 조선불교단 임원진의 구성과 이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97호, 2017, 293-322쪽.

조성택, 「근대불교학과 한국 근대불교」. 『민족문화연구』 제45호, 2006, 77-108쪽.

逸見通漢, 「即行は時期尚早ではないか」. 『朝鮮佛教』 제27호, 1926, 18-19쪽.

川村五峯, 「オレは寺に居る間は断じて妻帯せぬ—ドクトル渡邊海旭和尚のこと」. 『朝鮮佛教』 제29호, 1926, 25쪽.

後藤瑞嚴, 「朝鮮仏教界に及ぼす結果が注目に値せん」. 『朝鮮佛教』 제27호, 1926, 17쪽.

佐藤稠松, 「親鸞とルーテル-東西両教の改革と妻帯問題」. 『朝鮮佛教』 제28호, 1926, 13-15쪽.

中村三笑, 「朝鮮僧侶の肉食妻帯に就て」. 『朝鮮佛教』 제27호, 1926, 2-7쪽.

姜泰秀, 「禪教兩宗の區別を明らかにせよ」. 『朝鮮佛教』 제29호, 1926, 20-21쪽.

具萬化, 「その罪三千大千世界に唾棄する處無し」. 『朝鮮佛教』 제28호, 1926, 19쪽.

金松月, 「朝鮮仏教僧侶の破戒的運動」. 『朝鮮佛教』 제27호, 1926, 15-17쪽.
金連聲,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私は朝鮮僧侶の肉食妻帯の實現を渴望します」. 『朝鮮佛教』 제27호, 1926, 27-28쪽.
_____, 「なんと尊い問題であらうか」. 『朝鮮佛教』 제28호, 1926, 22-23쪽.
_____, 「知識人と私(二)」. 『朝鮮佛教』 제39호, 1927, 24-26쪽.
金蓮湖·朴大奎, 「彼は全鮮仏教の病魔である」. 『朝鮮佛教』 제28호, 1926, 23-24쪽.
釋時鏡, 「妻를 置하고 肉을 食하는 승려계에 대하여」. 『朝鮮佛教』 제28호, 1926, 19-20쪽.
安錫淵, 「釋尊의 婦子로 娶妻食肉의 可乎야-時代已晚이다」. 『朝鮮佛教』 제27호, 1926, 24-27쪽.
吳官守, 「奇怪な天物が東亞に横行する」. 『朝鮮佛教』 제29호, 1926, 18-20쪽.
兪萬兼, 「宗教行政の立場から」. 『朝鮮佛教』 제27호, 1926, 31-32쪽.
英虎, 「噫、朝鮮佛教の末路」. 『朝鮮佛教』 제28호, 1926, 16-18쪽.
李混惺, 「朝鮮佛教の興廢は何の関係もない」. 『朝鮮佛教』 제27호, 1926, 13-14쪽.
全日源, 「僧侶帶妻肉食에 對하야」. 『朝鮮佛教』 제28호, 1926, 25-26쪽.
澤光範, 「必要にあらず止むを得ざるなり」. 『朝鮮佛教』 제27호, 1926, 22-23쪽.
韓鐘秀, 「吾が佛教の大賊である」. 『朝鮮佛教』 제29호, 1926, 20쪽.
洪鎮赫, 「朝鮮佛教の復興は耳朶的な覚醒と僧侶の人格向上に在る」. 『朝鮮佛教』 제27호, 1926, 20-22쪽.

국문초록

이글은 1920년대 중후반 『조선불교』 잡지에 나타난 승려 결혼과 관련된 논쟁을 선행연구와 대조하여 고찰한 것이다. 승려 결혼에 대하여 찬성(친일)과 반대(항일)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기고문을 살펴본다면 찬반이 뒤엉킨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승려 결혼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총독부, 일본불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승려 결혼에 반대하면서도 오히려 지계(持戒)의 문제를 역으로 승려 결혼으로 해결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상정하는 올바른 승려의 모습은 대체로 전통적인 참선과 산속 사원 생활 등을 떠올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초현실적이고 신비롭고 숭엄적인 것이었다. 한편, 승려 결혼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은 이들은 승려 결혼 문제를 조선불교의 사회화, 민중화, 보편적 종교와 연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승려 결혼과 파계와의 관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승려가 고기를 취하고 결혼하는 행위 자체에는 이미 파계라는 사상을 내재시켜 놓았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찬반 의견을 내놓은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조선불교의 미래는 달랐지만, 승려 결혼 찬반의 주장보다는 조선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오늘날 역사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이러한 불협화음은, 당시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는지 모를 것이다.

투고일 2021. 9. 21.

심사일 2021. 9. 21.

제작 확정일 2021. 11. 10.

주제어 승려결혼(Marriage of Monks), 대처승(Married Monk), 조선불교단(Joseon Buddhist Association), 조선불교(Joseon Buddhists)

Abstract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Marriage of Monks in the Buddhist Community in Modern Joseon: Focused on the Korean People's Arguments

Je, Jum-suk

This study discusses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marriage of monks in the magazine Joseon Buddhism in the mid to late 1920s, in comparison to the preceding studies. It is possible to check their diverse voices entangled with pros and cons by examining the overall contents of contributions, breaking from the frame of pro-Japanese and anti-Japanese over the marriage of monks. Some who opposed the marriage of monks showed favorable attitudes to the Government General and Japanese Buddhism while others would resolve the problem of the observance of the Buddhist commandments inversely with the marriage of monks, going against their marriage. The image of the right monks they assumed was mostly something surreal, mysterious, solemn far from reality, which reminds people of the traditional Zen meditation and mountain temple life.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greed on the marriage of monks connected the issue of the marriage of monks to the so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Joseon Buddhism, and universal religion. In addition, they keenly point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riage of monks and the violation of the Buddhist precepts that the idea of the violation of the Buddhist precepts has already been inherent in eating meat and the marriage of monks. However, among those who advocated such pros and con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common ground that is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Joseon Buddhism rather than arguing the pros and cons of the marriage of monks, even though their views on future of Joseon Buddhism differed. This dissonance felt when examined from today's historical perspective could be a phenomenon taken for granted by their eyes at the time.